

일반대학원 장학 규정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11.03.10.		16		
2	2011.09.01.		17		
3	2012.05.09.		18		
4	2013.11.01.		19		
5	2014.04.22.		20		
6	2016.05.27.		21		
7	2019.01.07.		22		
8	2019.06.17.		23		
9	2021.12.13.		24		
10	2023.01.16.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일반대학원 장학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기구 및 기능) ① 장학에 관한 제반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요건, 수혜 기간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학금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6.17]

제3조 삭제 <2019.6.17>

제4조(장학금의 구분) ①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7.9.1>

1.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2. 대학원생 조교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3. 총학생회 간부로서 학생자치활동에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4. 신입생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5. 삭제 <2011.9.1>
6. 외부 기관 또는 독지가가 출연한 교외장학금
7. 대학 및 대학원에 공헌이 있는 자에게 학업정진을 위해 지급하는 장학금
8.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 총장 및 해당 기관장의 특별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9. 외국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신설 2016.5.27.>
10. 대학 및 대학원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신설 2019.6.17>

② 제1항에 의한 장학금의 종류는 <별표 1> 과 같다. <신설 209.6.17>

제5조(자격) ① 교내장학금 지급 대상은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에 정규등록(연구등록생 제외)한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대학원 수학 외에 정규직업을 갖지 않는 대학원생으로 한다. 단, 근로조교장학, 석·박사연계장학, 학·석사연계장학, 계약학과장학, 산학연장학, 공로장학, 군위탁장학, 기타장학은 정규직업을 갖고 있는 대학원생도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2007.9.1, 2011.9.1., 2014.4.22., 2019.6.17., 2021.12.13., 2023.1.16>

② 전 1항에도 불구하고 공로장학 연구등록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4.22.>

③ 전 1항의 정규직업을 갖지 않은 전일제 학생의 기준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3.1.16.>

제6조(장학생 선발) ① 교내장학생은 매 학기 초에 대학원장이 추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발한다. 단 지정장학금 등 수시로 발생하는 장학금은 대학원위원회를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07.9.1., 2011.3.10., 2012.5.9., 2019.1.7., 2019.6.17.>

② 교외장학생은 외부 장학재단, 공공기관, 기타 단체가 지급하는 장학금을 수혜 받는 학생을 말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연자의 조건에 따라 지급하고 조건이 없을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학업성적, 연구실적 등 재능이 우수하나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는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12.5.9.>

제7조(장학금액 및 인원) 장학금 지급기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12.13.>

제8조(중복수혜 및 장학금 총액 제한) ① 각종 장학금은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개정 2021.12.13.>

② 장학금 중복 수혜 시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입학금 포함)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교외장학 및 근로조교장학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외국인 특별장학은 석사과정 특별장학, 박사과정 특별장학과 중복 수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9.6.17.]

제9조(명단의 공개) 장학생이 선정되면 명단을 학과로 송부 하며 학과에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수혜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장학금 반환 및 수혜자 교체) ① 장학금 수혜 학생이 제11조에 해당되는 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TA장학, RA장학 및 근로조교장학을 수혜 받은 학생은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주임 교수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교체할 수 있다.

② 교외장학생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학적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출연한 교외장학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9.6.17.]

제11조(장학금의 지급 중지)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단, 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9.1., 2013.9.1.>

1.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삭제 <2008.3.1.>

3. 휴학, 자퇴 및 제적된 경우 <신설 2013.11.1.. 2019.6.17>

4. 기타 장학금 지급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3.11.1.>

제12조 삭제 <2019.6.19.>

제13조(선발방법) 장학 종류별 장학생 선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장학 : 매 학기 각 학과 지도교수가 지정한 후보자를 주임교수가 대학원장에게 추천한다.
2. 조교장학
 - 가. TA장학 : 대학원장은 매 학기 학과별 배정인원을 학과로 통보하고, 주임교수는 학과의 배정 인원에 따라 선발하여 대학원장에게 추천한다.
 - 나. RA장학 : 대학원장은 매 학기 학과별 배정인원을 학과로 통보하고, 주임교수는 지도교수가 지정한 후보자를 대학원장에게 추천하며, 배정된 인원이 남을 경우 주임교수가 직접 추천할 수 있다.
 - 다. 근로조교장학 : 대학원 각 학과 주임교수는 학부과정 학부(과)장과 협의하여 매 학기 초 필요 인원 만큼의 근로조교를 선발하여 대학원장에게 추천한다.
3. 총학생회간부장학 : 총학생회장이 대학원장에게 추천한다.
4. 신입생성적우수장학 : 장학생 성적 기준에 의거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성적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5. 신입생성적최우수장학 : 장학생 성적 기준에 의거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성적 및 조건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6. 교외장학생 : 출연자의 조건에 따라 선발하며, 조건이 없을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한다.
7. 공로장학 :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선발한다.
8. 계약학과 장학 : 계약학과 설치 협약에 따라 선발한다.
9. 산학연 장학 : 산학연 협약에 따라 선발한다.
10. 석·박사연계장학 : 본교 석사과정 졸업생으로 박사과정에 진학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
11. 학·석사연계장학 :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12. 군위탁장학 : 학·군협약에 따라 선발한다.
13. 일우재단장학 : 일우재단에서 추천하여 총장이 선발한다.
14. 연구장려장학금 :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를 지도교수가 대학원장에게 추천한다.
15. 특별연구장학 : 매 학기 학과별 배정인원을 통보하여 학과에서 추천하며, 학과 미 추천 시 타 학과에 추가 배정할 수 있다.
16. 외국인 특별장학 : 외국인 학생에게 지급한다.
17. 기타 장학 : 대학 및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중 선발한다.

[본조신설 2019.6.17.]

제14조(장학생 추천) ① 학과 주임교수 또는 교수(지도교수 포함)가 추천을 할 때에는 학생의 경제사정, 학업성적 및 품행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장학추천 시 제5조 및 제6조제3항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17.]

제15조(수혜기간 및 성적기준) ①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성적 최우수 장학금 계속 수혜 대상자와 교외 장학금 계속 지급 대상자와 교외장학금 계속 지급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 개 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신입생 또는 합격 (P), 불합격(NP)으로 평가하는 과목만 수강하여 평점평균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3.>

제16조(복무시간 및 관리) ① 조교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의 복무시간 및 업무량은 조교의 학업 및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 조교장학생을 지원받는 부서장 또는 교원은 당해 학기동안 조교장학생의 근무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7.]

제17조(사무관장) 장학에 관한 사무는 대학원 행정실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7.9.1., 2011.3.10.>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9.6.17.>]

제18조(지급보고) 대학원장은 장학금 지급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본조신설 2019.6.17.]

부 칙

1.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2. 이 규정 이외의 장학관계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하되, 201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1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1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18. (규정폐지)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일반대학원 장학규정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1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 신설 2019.6.17 >

일반대학원 장학 종류

구 분		내 역
특별장학	석사과정 특별장학	지도교수가 추천하는 석사과정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박사과정 특별장학	지도교수가 추천하는 박사과정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TA장학		교수의 강의 및 실험·실습을 보조하거나 소속 학과 외의 타부서 행정지원을 하는 조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RA장학		교수의 연구 및 연구와 관련된 사무를 보조하는 조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근로조교장학		학부과정의 교육시설의 유지,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학부과정 각 학부(과)에서 필요에 따라 선발한 조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총학생회간부장학		총학생회 간부로서 학생자치활동에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신입생 성적우수장학		신입생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신입생 성적 최우수장학		신입생 성적 최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교외장학		외부 장학재단, 공공기관, 기타 단체가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연자의 조건에 따라 지급하고 조건이 없을 시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는 장학금
공로장학		대학 및 대학원에 공헌이 있는 자에게 학업정진을 위해 지급하는 장학금
계약학과장학		본교와 계약학과 설치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재직자에게 협약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산학연장학		본교와 산학연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재직자에게 협약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석·박사연계장학		본교 석사과정 졸업생이 석사학위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본교 박사과정에 진학할 경우 지급하는 장학금
학·석사연계장학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석사과정에 입학할 경우 지급하는 장학금
군위탁장학		교육부장관이 교육을 의뢰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일우재단장학		일우재단에서 추천하는 외국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연구장려장학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특별연구장학		교내·외 사업에 따른 항공특성화 분야 연구 및 대학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의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외국인 특별장학		외국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기타장학		대학 및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에 의해 지급하는 장학금